

교내 벤처(실험실)창업에 관한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직중인 교원 및 재학생, 연구원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며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창업기업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휴직 또는 겸직(임)이 허용되는 교원 또는 연구원(재학생)이 교내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 하는 것을 말한다.
2. “창업자”라 함은 “교내벤처창업”을 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3. “교내창업”이라 함은 “창업자” 또는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이용하여 대학 내 실험실, 연구실, 작업실,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창업한 것을 말한다.
4. “실험실공장”이라 함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안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자격) ① 창업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직 또는 겸직(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직원은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 창업자는 교내의 실험실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그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5조(창업기간) 창업기간은 3년으로 하며 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창업의 신청) 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첨부한 창업신청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내 벤처(실험실) 창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교내 벤처창업 설치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4. 재직증명서 및 겸직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5. 창업대상기술 설명서 1부

제7조(창업심의위원회) ①창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창업자의 선정 및 심의사항) ①창업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위원장이 그 결과를 창업자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창업자 결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해야 한다.

1. 창업기술의 사업성 평가 및 창업자의 적격 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3. 창업기술의 적법성 및 적합성 여부
4. 학교 운영상 지장 초래 여부
5. 기타 창업과 관련된 사항

제9조(창업자의 책임) ① 교내 벤처창업 육성규정 제8조에 의해 결정된 창업자는 산학협력단과 제반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창업자는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1. 겸직허가에 대한 조건으로 창업시 회사 주식의 3%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무상으로 기부한다. (단 기부 시점은 회사의 자본금이 1억원일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1억원 미만일 경우 1억원 증자시점까지 지속적으로 3%를 유지하여 기부한다)
 2. 창업회사가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추후 법인으로 등록시에 회사 주식의 3%를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무상으로 기증한다.
- ③ 창업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창업자에게 있으며, 창업과 관련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창업자는 창업이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인 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지원 범위) ①대학은 창업기업에 대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창업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사용 편의 제공
 2.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기기 및 장비의 사용 편의 제공
 3. 창업기업 소속 직원들에 대한 대학 출입 및 시설사용 편의 제공
 4. 기타 창업기업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으로 발생하는 제반 직접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되, 그 비용의 산정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공동연구 등) 대학은 창업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중단 및 취소) 대학은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지원을 중단 또는 창업 및 겸직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기업을 설립치 못한 경우
2. 창업기업이 대학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대학에 손해를 끼친 경우
3. 타인에게 사업을 승계시킨 경우
4. 경영실패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폐업한 경우
5. 공간사용이 부적절하거나 학교 품위에 손상이 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환경적 문제 및 과도한 에너지 사용 등 학교에 피해를 주는 경우
7. 기타 창업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자료의 제출 등) ①창업자는 창업기업 설립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기업에 한함)

3. 기타 관련 서류

②창업기업은 산학협력단에 창업지원기간 만료시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은 창업기업의 기밀을 창업기업과 협의 없이 외부로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학 관련규정과 기타 관련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업무주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한 주관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며, 교원인사에 관련한 사항 중 휴직은 교무팀이 관장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지침이 정하지 않는 벤처창업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참여기술인력현황

성 명			
학 력			
경 력			
기술분야 (분야.등급)			
기 타			

- 주) 1. 참여기술인력은 (예비)창업자와 동반입주하여 기술개발등 사업추진에 참여할 기술인력을 기재
 2. 경력과 기술자격은 창업기술관련분야의 해당사항을 기재
 3. 기타는 관련분야의 연구업적등을 기재

2. 추진계획

추진 일정		추진 내용	추진 방법
부터	까지		

3. 창업등기 및 추진현황

창 업 등 기	
연 구 내 용	
교 내 창 업 후 계 획	
기 타	

주) 연구내용은 창업(예정)제품 또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추진현황을 기재

III. 시장성

가. 주요경쟁대상 업체

국 내		국 외		
업 체 명	시장점유율	업 체 명	국 명	시장점유율
	%			%
	%			%
	%			%
	%			%
	%			%

주) 창업예정품목과 동종 또는 유사 품목의 주요경쟁대상 업체를 기재

나. 시장전망

국 내	국 외

주) 국내(외) 시장규모 및 시장증가 전망, 국내생산 및 수출입전망 등 향후 3년간의 시장 전망을 기재

다. 창업 후 판매전망(창업예정년도 포함 향후 5년간)

(단위:백만원)

년도	년		년		년		년		년		비고
구분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 년 평균매출 증가율 %
계											

라. 판매계획의 수립

■ 주관매처

■ 판매경로

■ 판매방법

■ 기 타

- 주) 1. 판매경로 : 제품의 수요자에 대한 중간 유통과정을 기재
 2. 판매방법 : 모기업납품, 위탁판매, 주문판매, 일반판매 등의 판매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재

IV. 기 타

1. 지원희망사항

지 도	경 영	
	기 술	
연 수	경 영	
	기 술	
설 비		
기 타		

〈별지 서식 제3호〉

실험실 벤처창업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창업 기업 개요	기업체명			직위
	기업형태			
개요	사업내용	업 종	생산제품명	가동예정일
실험실 공장 개요	실험실명			
	위 치			
	실험실 총면적 (㎡)		생산시설 면적(㎡)	
겸직요청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년이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에 의거 위와 같이 실험실 벤처창업을 위한 겸직허가를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div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div>				
선문대학교 총장 귀하				

	담당	계장	국장	단장
결재				

실험실 벤처창업 확인서(임대계약서 대응)

실험실 창업자 및 사업장 위치

1. 성명 :
2. 소속 :
3. 직위 :
4. 주민등록번호 :
5. 사업장명 :
6. 사업장 위치 :
7. 창업승인기간(겸직기간) :

위 사람은 본교에 재직중인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위 사업장에서의 창업이 허가되어 별도의 임대차계약이 필요없으므로(무상임대) 사업자등록, 연구소설립 등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를 본 문서로 대체함을 확인합니다.

200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